별첨 1

한국벤처투자 채용제한 사유

-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
 - 가.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
- 6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7.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
- 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형법」제303조에 규정된 죄
 - 나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라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10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
-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12.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
- 13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